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25. 5.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카드론 건전성 및 이용한도 관리 강화

회사의 2024년 9월말 카드론 잔액은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는데 특히 카드론 취급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이며 저신용자의 연체율은 카드론 전체 연체율보다 O배 높은 수준이다.

2024년 9월말 카드론 잔액 중 다중채무자의 잔액은 전년말 대비 증가하여 전체의 O%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12조에 따르면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을 차등화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신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로 카드론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 및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산출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는 등 한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리볼빙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회사의 2024년 9월말 결제성리볼빙 이월잔액은 전년말 대비 O% 증가하였는데,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말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2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2024년 9월말 기준 신규 리볼빙 약정 회원 기준으로 최소결제비율 10%를 적용받는 비중은 O%로 전년말 대비 O%p 급증하였다.

향후 약정 회원중 저신용자 비중이 증가하거나 최소결제비율 10%를 적용받는 회원이 증가할수록 결제능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결제성리볼빙 저신용자 비중 및 최소결제비율 10%를 적용받는 회원이 증가하는 경우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독립성 강화

회사는 내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자격요건,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임기 등 전반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업무의 독립성 및 충실성 측면에서 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이 금융소비자업무를 독립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강화

회사는 내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담당직원의 자격요건,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 내규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실제 업무수행 부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 기준 등 세부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직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를 담당직원으로 임명하는 예외적인 경우 담당직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예외 승인 절차가 부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 회의 소집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한 서면 협의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조직구조 및 세부 업무 처리 절차, 담당직원 예외 승인절차 등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PLCC(상업자 표시 전용카드) 상품 관련 마케팅비용 관리 강화

회사는 2024년 9월말 현재 O개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PLCC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카드회원의 O%를 차지하고 있고

PLCC 계약체결시 회사와 제휴사간 포인트비용 분담률 및 유효(사용)기간(1~10년) 등을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포인트 비용의 일정수준(예 : 100%)을 분담하는 건이 많음에도 수익성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마케팅비용(제3자 포인트비용)이 과다 지급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PLCC 계약시 제휴사와의 포인트비용 분담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PLCC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6) IT조직 및 인력 운용체계 정비

① AI 등 新사업 조직의 IT운영·통제 적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AI 등 新사업 조직을 IT직원과 업무직원이 함께 소속되어 전산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애자일(Agile)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동 조직에 대한 IT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IT자체감사 등의 상시감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IT내규 등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IT내부통제 및 사고예방 활동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CIO와 협업하여 IT 부서에 준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애자일 부서에 대한 IT감사, IT 자체감사 및 상시감시 방안을 내규에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② 적정한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고려한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대규모 IT 조직·인력을 운영하는데도 감사실 인력 O명이 IT감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계열사 및 자회사의 정보 보호최고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어 업무범위 및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내부통제 활동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감사실의 IT감사인력을 확충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산하 운영 조직을 효율화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7) IT자체감사 운영 강화

회사는 내규에 따라 IT자체감사인이 점검 대상·방법·기간·결과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소속 실·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하는데도,

IT자체감사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감사항목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는 결과 위주로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IT자체감사를 다소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주요 IT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이 적정하게 점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IT자체감사 절차, 범위, 점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IT자체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8) 제휴사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통제 강화

① 현대카드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O개사와 PLCC 관련 정보공유 제휴를 맺고 고객이 결제한 상품명 등의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제휴사가 고객이 동의한 정보만 제공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휴사의 오류 또는 실수로 미동의 정보가 수신될 경우 고객의 상품정보를 장기간 무단 수집 및 활용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제휴사의 제공 정보에 대하여 고객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 검증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대카드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제휴 O개사에 결제금액 등 결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동의 여부를 고객정보 제공 동의 관리 시스템에 저장·관리하고 있으나,

동 관리시스템은 최종 발급한 신용카드의 동의 여부만 저장·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제휴사에 대해 복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카드별로 정보제공 동의를 다르게 하는 경우, 마지막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동의 여부에 따라 미동의한 신용카드의 결제 관련 정보가 제휴사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가 신용카드별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동의 고객정보가 수집되거나 제휴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카드대출 금리산정 체계 미흡

① 기준가격 산정절차 불합리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제5조에 따르면 기본원가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며,

기준가격은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가격등급 및 대출상품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내규에 기본원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한 경우에만 기본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기 가격심사위원회 개회 전 기본원가 항목의 변동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원가 상승분을 목표이익률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본원가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조달원가 등 기본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기본원가의 항목별 원가에 각각 구분하여 반영하도록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략마진 운영한도 검토 미흡

내규에 따르면 목표이익률 구성항목인 전략마진의 해당 연도 운영한도는 매년 1분기 가격 결정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는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격심의위원회 안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전략마진 운용한도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의 검토없이 2022년 1분기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매년 1분기에 전략마진을 설정하고 이후 매분기 전략마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대출 금리역전 관련 사후관리 미흡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제16조에 따르면 내부 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산출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카드론 금리할인 마케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2년 2분기 금리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인한 금리역전이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금리역전 발생시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고, 금리역전 징후* 인지시 가격심사위원회에 대응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등급간 금리간격(하위등급의 운영가격 - 상위등급의 기준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 등

(3) 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내규에 따르면 신규상품 출시 후 일정기간 경과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현황(외형, 비용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예상손익만을 심의함에 따라 손익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손실이 발생한 상품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상품심의 안건에 실제손익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손실발생시 대응방안을 마련·보고하는 등 상품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 특별한도 운영 미흡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9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에게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할 수 있어

회사는 차량구매 등 일시적으로 이용한도가 부족한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부서 재량으로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영업추천제'를 적용하여 한도를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추천제 대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한도증액은 담당자가 전결가능하여 자의적으로 한도가 책정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차량 특별한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영업추천제 대상 중 일정금액 이하의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성분석위원회 운영 미흡

① 수익성분석 관련 내규의 구체성 부족

내규에 따르면 수익성분석위원회는 대형 가맹점 판촉 수익성 검토를 해야하고 마케팅 행사에 따른 수익성 분석자료를 수익성분석위원회에 보고하고 부진행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는 대형가맹점에 대하여 회사와 공동 판촉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익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부진행사의 정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수익성분석 관련 내규 체계 불합리

내규에 따르면 기존상품 대상으로 단일 마케팅 행사비용이 O원 이상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내규에서는 단일 행사비용 기준으로 더 큰 금액인 □원 이상의 마케팅 행사를 대상으로 수익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 미만의 마케팅 행사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성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의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대형가맹점 판촉 수익성 검토 및 마케팅행사 결과 부진 행사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익성 분석 관련 합리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6) 사외이사 평가방식 미흡

내규에 따라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기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당해 연도의 평가절차 및 방법이 매년 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가 진행되기 직전분기의 이사회에서 정해지므로 피평가자가 미리 평가에 대비하기 어렵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평가대상 기간, 평가 시기 등 세부절차를 평가대상 기간 전에 미리 공지하여 피평가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시 관련부서에서 각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 내역을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7) 겸직 임원의 업무 적정성 평가 체계 미흡

내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반기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여부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평가에 활용하는 평가항목이 평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해당 겸직 임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이해상충 발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없으며, 평가 결과도 검토 내용, 입증 자료 등 없이 '적정' 등의 의견으로 완료되어 임직원 겸직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임직원 겸직업무의 적정성 평가시 평가항목의 타당성 점검, 업무수행 당사자의 이해상충 여부 등 확인,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겸직 업무의 적정성 평가 및 점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저신용자 회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 기준 미흡

내규에는 저신용자 회원의 이용한도 하향 시 재산정한 최대 부여가능한도와 무관하게 기존 이용한도의 특정비율을 하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한도에서 특정비율 만큼 하향 조정하는 방식은 기존 이용한도가 재산정한 최대 부여가능한도 이내여서 한도 하향 조정 필요성이 낮은 회원의 이용한도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저신용자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부여한도 하향 조정 시 기존 이용한도가 재산정된 최대 부여가능한도를 초과하여 한도 하향이 필요한 회원의 이용한도만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저신용자 회원 한도 하향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9) 카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방식 개선 필요

여신금융협회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하 모범규준)」 제4조 제5항에서는 새로운 카드상품 개발 시 신용판매 수익이 신용판매 비용보다 크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범규준 제6조 제2항에서는 카드상품 출시 이후에는 내부통제부서에서 상품손익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실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새로운 카드상품 개발 시 신용판매 수익이 신용판매 비용보다 크도록 별도로 계산하여 설계하지 않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수익성 분석만 수행하며, 회사 내규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품 출시 이후 손익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실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새로운 카드상품 개발시 모범규준 제4조에 따라 신용판매 수익이 신용판매 비용보다 크도록 설계하는 별도의 분석절차를 회사 내규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범규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 출시 이후 손익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및 손실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0)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부통제 미흡

① 금리인하요구권 내규 미흡

내규에 따르면 차주는 재무 또는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회사에 각각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차주의 금리인하 심사 결과 재무 및 신용 상태 모두 개선된 것으로 인정되어도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차주의 금리인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차주의 재무 및 신용 상태 개선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금리인하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적정성 점검 미흡

내규에 따르면 회사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차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검사 대상 기간 중 현업부서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를 O건 미발송하거나 O건 지연 발송한 사실이 있고, 준법부서가 현업부서의 업무 적정성 점검 시 점검대상 샘플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현업부서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이용함에 따라 점검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점검 대상의 샘플 건수가 발송 건수에 비해 과소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준법부서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 점검하여 미발송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점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1) 불법모집발생 영업점 관리자에 대한 평가방식 미흡

내규에 따르면 회사는 불법모집이 발생한 영업점에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모집 발생 영업점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시 누적 패널티를 도입하면서도 누적 횟수를 연초마다 초기화하여 중징계 사안이 경징계로 조치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불법모집 발생 영업점의 관리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2) IT부문 내규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규정, 세칙, 지침 등의 체계로 내규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IT내규는 동 내규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편람, 기준서, 준칙 등으로 제정·운용하고 있고, 주요 IT업무 절차는 내규화하지 않고 부서 단위로 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IT내규에 IT업무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동 내규가 IT업무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IT업무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IT내규를 회사 내규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IT업무 전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등 IT업무가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IT부문 내규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3)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성능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임계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업무별 정보시스템 임계치를 내규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 보고 문서로만 작성·관리하고 있어, 동 문서의 보존기간(5년) 경과 시 파기 등으로 성능관리 운영 기준이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절차가 지속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별도 검토 없이 관련 가이드라인 대비 성능관리 임계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리하고 있어 서버 자원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산자원 성능이 미흡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시스템 자원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임계치 기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정한 전산자원을 확보하는 등 시스템 성능관리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4) 노후 전산장비 및 기술지원종료 운영체제 관리 미흡

① 노후 전산장비 관리 소홀

회사는 내규에 서버 등 노후 전산장비 폐기를 위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임의로 폐기 기준을 마련·적용하면서 운영 중인 노후 전산장비를 별도 검토 없이 폐기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등 폐기 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어, 운영 전산장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성능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노후장비 폐기 시 관련 내규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동 내규가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폐기 기준 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술지원 종료된 운영체제 관리 소홀

회사는 서버 O대에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OS)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사로부터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류·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는 업그레이드·기술지원 연장 등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5) 전산원장 계상액 관리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의 계상액과 전산원장 파일의 계상액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일치 항목은 그 원인 및 조치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있으나,

불일치 항목에 대한 원인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고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전산원장 불일치에 대한 사후 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와 전산원장의 계상액 불일치에 대한 원인 및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